

外國 職務發明制度 및 國有特許處理規程 抄

〈Ⅱ〉

— 日 本 國 —

③ 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관한 補償金 請求節次 및 支拂方法

(1974. 3. 13 制定)

特許法 第35條의 規定을 實施하기 위해 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관한 補償金의 請求 및 支拂方法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.

第1條 (定義) 이 規程 및 따로 정하는 國家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金 支拂要領에서 직무발명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이 그 性質上 當該發明을 한 국가공무원이 所屬하는 機關의 所管 業務範圍에 속하며 또한 당해발명을 함에 이른 行爲가 국가공무원의 過去 또는 現在의 직무에 속하고 主로 職務時間중에 이루어진 발명을 말하되 發明者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을 말한다.

第2條 (登錄補償金의 請求節次) 발명자는 登錄補償金請求書(樣式 1)를 소속 行政機關長에게 提出한다. 다만, 발명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持分에 따라 각각 발명자가 등록보상금을 청구한다.

2. 前項에서 一般會計가 特許를 받을 權利를 承繼한 경우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그 청구서를 4分期別로 取合하여 그 청구서에 각각 직무발명임을 證明하는 文書(樣式 2) 및 登錄補償金 請求一覽表를 添付(양식 2에 대해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직무발명이라는 증명문서를 첨부한다)하여 각각 2通씩을 各期の 翌月 25日까지 特許廳長官앞으로 제출한다. 다만 제4분기는 그 제4분기분을 3월 15日까지 취합하여 제출하며 사무절차상 청구 불가능한 것은 翌年 제1분기와 함께 청구기로 한다.

3. 제1항에서 特別會計가 特許를 받을 권리 또는 特許權을 승계한 경우는 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마다 등록보상금 청구일람표(양식 3)를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하여 권리내용 등

의 確認을 받기로 한다. 다만,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전항의 規定을 準用한다.

第3條 (實施補償金의 請求節次) 발명자는 실시보상금청구서(양식 4)를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한다.

2. 전항에서 일반회계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장은 제출된 그 청구서에 직무발명임을 증명하는 문서(양식 2), 國家의 收入을 증명하는 書面(양식 5), 특허권의 실시 또는 讓渡契約書의 寫本 및 실시보상금청구일람표(양식 6)를 첨부하여 각각 2通씩을 每年 2월 1日까지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한다.

위의 실시보상금청구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日까지 계약서에 따라 국가에 納入한 1년간의 金額에 依據(그 算定方法은 제6조의 定함에 따른다), 청구금액을 기재한 후 청구기로 한다.

3. 제1항에서 특별회계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은 기관마다 실시보상금 청구일람표(양식 6) 및 특허권의 실시 또는 양도계약서의 사본을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하여 권리내용 등의 확인을 받기로 한다. 다만 제출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規定을 準用한다.

第4條 (補償金請求權의 承繼人 또는 轉 退職者의 補償金請求節次) 前 2條의 規定은 발명자가 保有하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 퇴직한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의 청구를 할 경우에 準用한다.

2. 權利承繼者가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立證하는 서면(戶籍抄本의 사본 등) 2통을 첨부한다. 다만, 양식 1 또는 4의 보상금청구서의 「※()」欄에는 그 승계인의 住所 및 姓名을 기재하고 직무발명증명서(양식 2)의 「6. 其他」란에는 그 승계인의 성명, 이유(發明者 死亡 등) 및 關係(발명자의 妻 등)를 기재한다.

3. 전 퇴직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는 청구서에

